

제140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제140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2019. 02. 26(화)



- 일 시 : 2019. 02. 26.(화) 15 : 00
- 장 소 : 청주의료원 자혜학당
- 참 석 자 : 이사 10명
(손병관, 김용호, 김혜련, 정규호, 이순걸, 조규숙,
박선미, 이상수, 김원중, 김동구)
- 안 건 : 총 6건

1. 2019 - 01호 2018 회계연도 결산(안)
2. 2019 - 02호 진료비 장기미수금 결손처분 심의·의결(안)
3. 2019 - 03호 2019년도 임대차 심의·의결(안)
4. 2019 - 04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9 - 05호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6. 2019 - 06호 진료실적금지급기준 일부개정(안)

- 의 장 :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청주의료원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고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사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서원보건소장님이 2019년1월1일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사님으로 참석하시겠습니다. 이사님 한말씀 하시죠
- 김혜련이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의 장 : 그러면 지금부터 재적 이사 12명중 10명이 참석하시어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정관 제21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차 정기이사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박선미 이사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하시죠
- 박선미이사 : 부족한데, 참석하였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장 : 오늘 심의·의결해 주실 안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청주의료원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을 포함하여 총 6건입니다.

그러면 금일 제140차 정기이사회 의결안건으로 회의서류 제1페이지 상정번호 제2019-1호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병원 회계감사를 하셨던 한빛회계법인 정석화 대표이사께서 직접 결산 감사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화 공인회계사 2018 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 의 장 :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이사 : 회계쪽으로는 문의한이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석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결산서 설명]

- 정규호이사 : 167백만원 이익이 났다는 말씀이시죠?
- 정석화공인회계사 : 네. 그렇습니다.
- 정규호이사 : 그러면, 국도비 감가상각은 얼마나 되나요?
- 정석화공인회계사 : 약 30억원정도이며, 작년에도 비슷한 29억 정도입니다.
- 정규호이사 : 장례식장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올해 1억이상 수익이 났다고는 하지만, 몇 년 전까지 적용했던 국도비 감가상각 30억원을 적용하면 28억 내지 29억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흑자입니다. 지금 경영상태가 흑자라고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 김용호이사 : 의료외수익이 매년 감소하는 것은 화장쪽으로 많이 가는 장례식장 문화 때문에 그런 것 인가요?
- 의 장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례식장 손님들도 줄어들고 손님들이 드시는 음식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런 장례식장 문화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비스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을 관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해주시고 있습니다.
- 김용호이사 : 의료외수익으로 의료손실을 보충하고 있는데, 의료수익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본이 944백만원 감소한 이유와 의료미수금 8,945백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정석화공인회계사 :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설정 기준 자체가 변경되어 당기 이전 11억원 반영하여 감소한 것입니다.
- 김용호이사 : 현금보유량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 의 장 : 조금 더 좋습니다. 1월에는 23억, 2월말 현재 43억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사님이 말씀하신 의료미수금은 연말에 진료비청구액 중 공단에서 미지급된 금액입니다. 연말에 수입이 늘어서 의료미수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 김용호이사 : 진료비청구가 늦어지는 일은 없나요?
- 의 장 : 그런 일은 없습니다.
- 김용호이사 : 충주의료원의 경우 진료비청구가 몇 달씩 늦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적게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 정석화공인회계사 : 의사 계약시 산정된 퇴직금액이 통상 퇴직금액보다 적게 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퇴직의사들이 적게 산정되어 있

는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하여 모든 의사들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반영한 상황입니다.

○ 정규호이사 : 회계감사로서 현금흐름의 건전성 측면에서 어떤 우려를 가질만한 상황은 없나요?

○ 정석화공인회계사 :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의 장 : 현금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오늘 현금 7억원 적립을 승인했습니다. 현금흐름에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석화공인회계사 : 국도비감가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지원받은 국도비로 건물을 짓거나 의료장비를 구매하는데 그에 대한 감가상각시 청주의료원 자비로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용도 청주의료원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손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다음은 제5페이지 상정번호 제2019-2호 청주의료원 진료비 장기미수금 결손처분 심의·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진료비 장기미수금 결손처분 심의·의결(안) 설명]

○ 의 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호이사 : 채권소멸시효 민법 3년에 의거해서 결손처분 하시는 거죠? 미수금최소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진료비 장기미수금 결손처분 심의·의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다음은 제7페이지 상정번호 제2019-3호 청주의료원 2019년도 임대차 심의·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2019년도 임대차 심의·의결(안) 설명]

○ 의 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이사 : 본인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오는데 이렇게 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 인가요?

○ 의 장 : 지방의료원이 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으면 더 문제가 있어서 모든 의료원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 조규숙이사 : 의사들이 안 오시려고 하니까, 모셔 와야 하기 때문에.

○ 의 장 : 최대 5천만원 총 4년간 지원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3분 정도 예상하여 1억5천만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 의 장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도 임대차 심의·의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다음은 제9페이지 상정번호 제2019-4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의 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호이사 : 약무직 인건비 12명으로 계상하였는데 2명 증원해서 14명 아닌가요?
- 관리부장 : 현원13명이며, 12명은 정규직으로 약무직 인건비에 계상되어 있고 1명은 일용직 보수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의 장 : 지난번 이사회에서 약무직 2명 증원(안)에 대해 사사오입이 가능하여 1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김원중이사 : 관리운영비 중에 인증평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의 장 : 의료기관 평가중에 가장 중요한 평가이며, 다른 병원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닙니다.
- 김원중이사 : CCTV 추가설치비가 19백만원인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 시설관리팀장 : 병동CCTV 추가설치는 정신과병동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추가설치 및 교차 감시시스템이 필요하여 반영한 금액입니다.
- 정규호이사 :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는 국도비 지원인가요? 공사내용은? 의료장비도 포함인가요?
- 의 장 : 국도비 지원 사업이며, 시설비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중환자실 법적기준이 현재 의료원 652병상의 5%인 33병상을 중환자실로 갖춰야 중환자실 관리료를 받을 수 있어서 2개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현 정부의 강조사항인 공공보건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기준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수준으로 응급의료 시설을 갖추는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규호이사 : 잘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응급실 및 중환자실이 제격을 갖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금년 중에 시설이 완공되나요?

- 의 장 : 내년 7월 예정입니다.
-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다음은 제13페이지 상정번호 제2018-05호 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실장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설명]
- 의 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호이사 : 전산실과 의료정보관리실과 명칭의 혼용 우려는 없나요?
- 의 장 : 네, 명칭 혼용의 우려는 없습니다. 본건은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다음은 제18페이지 상정번호 제2019-6호 청주의료원 진료실적금지급기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실장 청주의료원 진료실적금지급기준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의 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이사 : 그러면 진료실적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이죠?
- 의 장 : 인센티브는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수입을 늘리기

위해 행위별로 많이 한 사람한테 많이 주겠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고 검진 시작시간을 오전8시30분에서 오전8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과는 검진실적을 지급 하였으나, 나머지 5개과 정도는 그냥 진료에 포함하여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 진료 실적급 산정기준을 일원화 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김용호이사 : 13%를 주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나요?
- 기획실장 : 종합검진 일일 수용한계를 55명에서 60명으로 대장내시경 25건에서 30건으로 하면 연간 검진인원 약1200명 정도 늘어나고 수입도 약4억8천만원정도 증가하며 실적급 지출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용호이사 : 목표액을 정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주는 것은 어떤가요?
- 기획홍보팀장 : 현재의 목표실적급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개정안은 각각의 검사에 대한 수당을 실적급으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김용호이사 : 다른 진료과의 반발은 없나요?
- 기획홍보팀장 : 검진 연관 부서도 각각의 검사에 일정건수 이상 초과 달성 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김원중이사 : 그러면 과진료에 대한 염려는 없나요?
- 기획홍보팀장 : 일일 수행가능 건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진료에 대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 장 : 일반 환자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오신 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검진 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대장내시경을 25건에서 30건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 김용호이사 : 대장내시경 때문에 검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만큼 더 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김원중이사 : 그러면 내시경 기계는 건수 증가에 문제없이 돌아가나요?

소독이라든지 다 감안해서요

- 기획홍보팀장 :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 정규호이사 : 의사 동기유발로 수입 증가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건 다른 의료기관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청주의료원만 이렇게 하는 건지 비교를 해보셨나요?
- 이순걸이사 :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관내 건강검진 의료기관과 급여를 비교했을 경우 우리병원 검진외사들의 급여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타병원 이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일한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련이사 : 개정(안)중에서 진료치과의사의 건강검진업무와 구강검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의 장 : 검진치과의사 2명이 모두 외근시 진료치과의사가 검진업무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김혜련이사 : 진료치과의사가 건강검진업무를 시행할 경우로 했으면 혼란이 없을 텐데 진료치과의사가 건강검진업무 중 구강검진을 시행할 경우로 라고 해서 혼란이 있습니다.
- 기획홍보팀장 : 치과의사도 건강검진 상담이 가능해서 치과의사의 건강검진업무를 구강검진으로 한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 김혜련이사 : 진료치과의사가 건강검진을 하면 당연히 구강검진을 하는 것인데 내과상담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용호이사 : 저도 질문하려고 했던것인데, 아무런 설명없이 구강검진을 시행할 경우 수수료의 5%를 지급한다고 해서 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 의 장 : 네. 그 내용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주의료원 진료실적급지급기준 일부개정(안)은 일부내용을 수정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장시간 불편한 자리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심의 의결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명확함을 기하기 위하여 김용호 이사님과 정규호 이사님께서 회의록에 확인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차 정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